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06호 2021. 6. 7.(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39호)
-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40호)
-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41호)
-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42호)

훈 령

- 예천군 사무 내부위임 규정 일부개정규정(예천군 훈령 제431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39호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5명”을 “7명”으로, “3명”을 “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7754호, 2021. 6. 23. 시행) 개정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직 윤리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제2조)
 -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변경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40호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임 사 무 명 (권한위임)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총 무 행 정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의 처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읍면
	2. 의회소속공무원 임용권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상당계급승진)·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2.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3.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4. 전문경력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행정직군 숙기·방호직렬공무원 및 기술직군 시설관리·위생 ·조리·간호조무·운전 직렬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자치법제91조 지방자치법제91조 지방자치시행령제63조의2 및 별표 7의2	의회 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새마을 경 제 행 정	1. 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 다음의 권한	1. 용자대상자 및 마을 조사 2. 용자대상자 및 마을 추천 3. 용자금회수 및 독촉 4. 사업 지도감독	예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 영관리조례 제4조, 제10조 같은 조례 제7조, 제14조 같은 조례 제8조, 제15조, 제17조 같은 조례 제9조, 제22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 기관
	2. 공설시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와 사용제한 2. 사용료부과·반환·감면 3. 사용자에 대한 설비 복구 및 기타사항	예천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8조, 제9조 같은 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 같은 조례 제19조	읍면 읍면 읍면
종합민원 지적행정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 중 다 음의 권한	1.보증인의 위촉·해촉 2.보증인의 위촉·해촉 공고등 3.보증서·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 대장소관청 이첩	같은법 제11조제2항	읍면
재 무 행 정	1. 군수입증지 조례중 다음 의 권한 2. 지방세기본법 중 다음의 권한 3. 지방세법 중 다음의 권한 4.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에 대한 다음의 권한 5. 지방재정법 중 다음의 권한 6. 군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의 권한	1. 증지의 사용 1.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1. 건축물 실측 현지조사 2. 토지현황 조사 1. 해당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 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 액 결정, 반환결정 1.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집행 2.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착공 및 준공 검사 1. 불용품 매각처리	예천군수입증지조례 제4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62조, 지방재정법 제91조 지방재정법 제67조 지방재정법 제67조 예천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건축행정	1. 건축법 중 다음의 권한	1.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3. 공작물의 축조신고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15조의2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예천읍 호명면 예천읍 호명면 예천읍 호명면
도시행정	1. 도시지역내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2.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3. 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회복	도로법제61조 도로법제66조 도로법 제72조및제73조	읍면 읍면 읍면
주민복지 행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률 중 다음의 권한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1. 구호환자, 진료신청 2. 수급자 증명 3. 급여신청 1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2.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3. 개인묘지의 설치신고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주민복지 행정	3. 기초연금법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권한	1. 기초연금의 지급신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	읍면
환경관리 행정	1.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 한 다음 권한	1.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 및 발생억제 추진	폐기물관리법 제4조	읍면
		2.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같은법 제6조	읍면
		3. 생활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같은 법 제8조제1항	읍면
		4. 생활폐기물 청결유지 명령	같은 법 제8조제3항	읍면
		5.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68조	읍면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 진을 위한 시책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읍면
	2.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하수도법 제39조	읍면
	3. 공중화장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폐쇄승인 신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읍면
산림복지 행정	1.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입산신고	산림보호법 제15조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건설교통 행정	1. 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	도로법 제61조	읍면
		2.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66조	읍면
		3. 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회복	같은 법 제72조 및 제73조	읍면
	2.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	농업촌도로정비법 제18조	읍면
		2.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19조	읍면
		3.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20조	읍면
	3.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용신고, 변경신고 처리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 지정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면
		2. 번호판 부착과 봉인	같은 법 제49조	면
		3. 정비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면
		4. 운행정지 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면
		5. 이륜자동차의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면
		6. 이륜자동차의 준용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2조	면
안전재난 행정	1. 소하천정비법 중 다음의 권한	1.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읍면
		2.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22조	읍면

◇개정이유

예천군 종합민원과와 건축과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따라 늘어나는 부동산 및 건축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신속한 원스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별표)

- 건축도시행정 ⇒ 건축행정 및 도시행정
- 산림축산행정 ⇒ 산림녹지행정

나. 종합민원지적행정 위임사무 신설(별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보증인의 위촉·해촉, 보증서 확인, 확인서 발급 및 공고, 접수 대장소관청 이첩

다. 건축분야의 세분화된 단위사무 통합 및 수임기관에 호명면 추가(별표)

라. 건축행정 위임사무 중 용자금 징수 및 관리 삭제(별표)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41호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2020년 3차 및 4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과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없애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제16조)

나.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에 대한 규정 삭제(제22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42호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제4조 내지 제6조”를 “제3조, 제5조, 제9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u>예 천 군 청</u>	<u>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u>	예천군 일원
예천읍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예천읍 일원
용문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54	용문면 일원
효자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1481	효자면 일원
은풍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88	은풍면 일원
감천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389	감천면 일원
보문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27	보문면 일원
호명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 2	호명면 일원
유천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99-8	유천면 일원
용궁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1길 45	용궁면 일원
개포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길 28-8	개포면 일원
지보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26-5	지보면 일원
풍양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50	풍양면 일원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제1조)

나.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별표)

- 현행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9
- 개정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예천군 사무 내부위임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6월 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31호

예천군 사무 내부위임 규정 일부개정규정

예천군 사무 내부위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내부위임사항(군 ~ 읍면)

분야별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총 분 아	지방공무원법중 다음 권한 1. 읍면담당 보직 발령(인구 3만이상 읍은 과장 포함) 2. 직원의 소내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 동법 제6조	읍면 읍면
	리개발자문위원회에 관한 권한 1. 리개발위원회 감사위원 위촉	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제3조	읍면
건 축 분 아	옥외광고물중 다음 권한 1. 옥외광고물설치 및 살포에 관한 허가 및 신고 (2개 읍면이상 해당사무 제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읍면
재 무 분 아	지방세기본법 중 다음 권한 1.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 • 납세의 고지, 독촉장, 최고장 발부 및 송달 • 군세 징수금 징수 • 과세자료 조사	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군세 기본조례 제5조	읍면
	2. 도세 징수금 징수	지방세기본법 제 67조	읍면
	지방세법 중 다음 권한 1.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처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0조	읍면
	지방세기본법 중 다음 권한 1 지방세 건당 300,000원 미만의 결손처분	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제96조	읍
	2. 납세의무 신고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읍
	군 물품관리조례 중 다음 권한 1. 물품불용품의 결정	예천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읍면
중 합 민 원 분 아	주민등록법 중 다음 권한 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및 독촉절차 이행	주민등록법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21조	읍면
	출입국관리법중 다음 권한 1.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읍면
	지적공부열람 및 등본발급 중 다음 권한 1.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2. 지적도(임야도)등본 발급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	읍면 읍면 읍면

분야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읍면
중 합 민 원 분 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다음의 권한 1.보증인의 위촉·해촉 2.보증인의 위촉·해촉 공고 등 3.보증서·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 대장소관청 이첩	같은 법 제11조제2항	읍면
건 축 분 야	건축법 중 다음 권한 1.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사용승인 2.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3.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4. 공작물 축조신고 5.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건축법 제14조, 제22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83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예천읍, 호명면 예천읍, 호명면 예천읍, 호명면 예천읍, 호명면 읍면
주민복지분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 권한 1. 사설묘지(공원묘지와 묘지구역이 2개 읍면 겹치는 묘지 제외)설치허가 2. 무연고 분묘의 처리 등 아동복지법 중 다음 권한 1.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2. 아동 등에 대한 조사 3. 아동의 보호신청 4. 요보호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보고 5. 아동의 친권상실 청구 노인복지법중 다음 권한 1. 노인복지시설의 상담 입소 조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제27조 및 제28조 아동복지법 제13조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 제12조 노인복지법 제28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환 경 관 리 분 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중 다음 권한 1.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유지 관리 하수도법 중 다음 권한 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지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수도법 제39조	읍면 읍면

분야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농 정 분 야	농지법 중 다음 권한 1. 농지전용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2.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및 단속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관한 권한	농지법 제35조 농지법시행령 제58조 양곡관리법 제10조	읍면 읍면 읍면
축 산 분 야	가축방역 중 다음 권한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2. 검사, 주사, 약물목욕 또는 투약 3. 소독 등의 실시 축산분뇨처리사업 중 다음 권한 1. 축산분뇨처리사업 현황 조사 가축통계조사 및 사료작물 현황 조사에 관한 권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5조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축산법 제3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건설분야	농지법 중 다음 권한 1. 개간지 유지관리 도로법 중 다음 권한 1. 접도구역 관리 2. 도로원상회복 의무면제승인(지방도, 군도) 3.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통지(지방도, 군도) 4. 비상재해시 토지 등 사용 5. 지방도 도로부지 점용(일시사용) 허가 및 취소 6. 지방도 도로부지 점용료 조정 징수 및 감면 7. 접도구역내의 위험 예방조치 농어촌정비법 중 다음 권한 1. 수리계의 설치 운영 및 시설점검과 감독업무	농지법 제39조 도로법 제49조 동법 제43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9조제4항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동법 제126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재난관리 분 야	하천법 중 다음 권한 1. 하천부지 점용료의 징수 2. 하천구역내의 식물 재배 3. 하천유수 인용허가 및 취소 4. 하천부지점용(연장)허가 및 취소 5. 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양수의 허가 및 취소	하천법 제37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동법 제 5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분야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재난관리 분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중 다음 권한 1. 시설물자등의 관리 수용 2. 응급조치 종사명령 3. 재해실태조사 및 이재민 발생보고 4.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상황실 운영 도선법 중 다음 권한 1. 도선장 관리 2. 도선료 징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중 다음 권한 1.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취소 2. 공유수면 허가에 관한 공고 3. 공유수면관리 의무의 양도 4.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명령 5.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승인 6.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징수 7.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강제 징수 8. 무허가 공유수면의 점용단속 9.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금지 10. 공유수면 점용자에 대한 조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69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 도선법 제18조 동법 제21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 5조 같은 법 제 8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개정이유

예천군 종합민원과와 건축과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따라 늘어나는 부동산 및 건축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신속한 원스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별표 1)

- 건축도시분야 ⇒ 건축분야
- 산림축산분야 ⇒ 축산분야

나. 종합민원분야 위임사무 신설(별표 1)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보증인의 위촉·해촉, 보증서 확인, 확인서 발급 및 공고, 접수 대장소관청 이첩
- 다. 건축분야의 세분화된 위임사무 통합 및 수임기관에 호명면 추가(별표 1)